

디지털무역 시대의 한국·중국·일본의 전략적 무역정책에 관한 연구

류자자

경남대학교대학원 박사과정수료

한낙현

경남대학교 무역물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Strategic Trade Policy of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Era of Digital Trade

Jia-Jia Liu^a, Nak-Hyun Han^b

^aPh.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nam University, South Korea

^b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Logistics, Kyungnam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11 December 2022, Revised 25 December 2022, Accepted 27 December 2022

Abstract

There are two aspects of digital trade: the digitalisation of goods/services being traded and the digitalisation of the transactional act. Digital data (i.e. machine-readable industrial data and transactional data) is the major driving force for both aspects of digital trade. Digital data is a non-rivalrous input, whether for production or marketing activities, and is thus able to be used by many firms or government agencies without limiting the use of others. Digital platforms provide online infrastructure for the interactions between groups, for instance, consumers and producers. The externality effect refers to the situation in which prosperity in one group on a given platform will improve the returns of other groups on the same platform. In the era of the data-driven economy, strategic trade policy can involve data-related policies. The major objective of these policies i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firms. For instance, firms may be subsidised if they use cloud services provided by specific platforms. This strand of strategic trade policies might be useful for increasing the competitiveness of small-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via the digitalisation of production/marketing processes. Alternatively, strategic trade policy may also exploit the externality effect via platform economy-related policies. Further, some countries may form data coalitions to facilitate cross-border data flow. This paper uses cases in Asian countries to illustrate which role these strategic trade policies can play in the digital economy.

Keywords: Digital Data, Digital Economy, Digital Trade, Strategic Trade Policies

JEL Classifications: F13, F42, F65, G18

^a First Author, E-mail: dugym520@naver.com

^b Corresponding Author, E-mail: nhhan@kyungnam.ac.kr

© 2022 The Korea Trad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디지털 경제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에 의한 상품·서비스와 그 이외의 산업에 있어서의 ICT의 투입물에 의한 부가가치의 합계이다(OECD, 2020). 디지털 무역은 디지털 경제의 한 측면이지만 경제의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 무역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무역의 대상이 되는 제품·서비스의 디지털화와 거래행위의 디지털화이다.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데이터가 경제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European Commission, 2014). 이러한 디지털 무역은 상품과 서비스의 주문이나, 생산과 배송이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국제간의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더불어 상업적인 디지털 재화와 가치 창출에 필요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도 범주에 포함된다. 그리고 디지털 무역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무역,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를 디지털화한 제품이나 디지털화된 서비스가 내재된 상품 및 상업적 가치가 결부되어있는 정보의 수집이나 분석 및 가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데이터의 국경이동으로 분류되고 있다(Kim Yeon-Dae and Jae-Won Hong, 2021).

데이터 중심 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무역의 디지털화가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이 특징의 주된 이유는 디지털 데이터가 생산을 위한 비경쟁적인 투입물이기 때문이다. 즉, 디지털 데이터는 타인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많은 기업이나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창출한다. 따라서 데이터 공유와 경제 주체 간의 디지털 데이터 이동은 효율성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Jones and Tonetti, 2020). 국경간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은 국제시장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의 거래비용 절감도 유발한다. 데이터 중심 경제의 또 다른 특징은 주로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외부효과¹⁾이

다. 디지털 플랫폼은 소비자과 생산자 등 그룹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온라인 인프라를 제공한다. 이 경우의 외부성이란 플랫폼을 이용하는 생산자가 많을수록 같은 플랫폼의 소비자에게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Qian, 2020).

지난 수십년간 국제무역은 대폭으로 자유화해 관세는 과거 최저 세율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4년에서 2006년 사이에 세계 관세율은 8.57%에서 3.16%로 떨어졌다. 따라서 국제무역에 관한 학문연구분야에서 무역정책은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왔다(Goldberg and Pavcnik, 2016). 그러나 데이터 중심 경제의 국제무역 분야에서는 정책개입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이 발생하면 '다중 평형'이 될 수 있으며, 다른 평형 하에서 시장구조가 극적으로 다를 수 있다(Myerson, 2004). 정부는 기업의 전략적 결정을 바꾸어 평형을 선택하기 위한 데이터 관련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무역의 규모에 관한 수확체증과 외부효과를 활용하는 무역정책의 채택은 정책 입안자나 학자에게는 새로운 견해가 아니다. 경제성장과 발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호랑이의 경제적 성장에 있어서 무역정책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Wade, 2004). 수출보조금과 수입규제는 20세기 후반의 한국 경제나 일본 경제에서는 매우 중대하다고 여겨졌다. 이와 같이 정부는 보조금이나 관세 등의 개입을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Qian, 2020).

디지털 무역에 대한 국가별 정책 목적이 다양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협상에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규범의 우선순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디지털 무역에 대한 자유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들과 동일한 분야에 충분한 규제 권한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들 간 치열한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개별경제 주체는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이나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사적 편익과 비용만을 고려하여 행동한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제화나 서비스가 적정수준으로 생산, 소비되지 못하여 비효율적인 자원배분(in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의 문제를 야기한다.

1) 외부성(externality) 또는 외부효과는 경제적 활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그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에서 단기간 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Kim Jee-Eun, 2022). 다자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할 때 자유화 추진에 적극적인 국가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과 같은 지역무역체제를 활용하여 규범을 수립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Willemys, 2021).

또한 전략적 무역정책은 디지털무역을 촉진 시켜야 하며 5G 등 데이터 인프라를 향상시킴에 따라 규모에 관한 수확체증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각국은 기업수준에서의 국경간 데이터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연합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디지털경제의 발전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변화하는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경제는 이와 함께 전통적인 무역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건을 생산하고 실어 나르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전과 차이가 없지만, 인터넷과 IT의 신기술은 거래되는 상품과 그 상품이 거래되는 방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디지털무역협정에서의 예외규정은 디지털무역의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핵심규정인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의 국경간 거래와 관련하여 자유화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자국민의 개인정보 및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허용하는 문제와 직결됨으로 국가차원에서 민감한 쟁점일 수 밖에 없다. 디지털무역에의 적용은 다가올 미래의 또 다른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디지털 무역과 관련한 선행연구로서 Lee Kyu-Yub, et al.(2021)은 디지털 전환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해 고찰하고, Lee Jae-Young(2020)은 디지털 무역규범의 주요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Cheong Sun-Tae(2019)는 디지털무역 자유화를 위한 지역무역협정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분석하고, Kim Gi-Hong(2018)은 디지털무역의 개념과 디지털무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를 분석하고, Hwang Ji-Hyeon and Young-Il Kim(2021)은 디지털무역 규범의 최근 동향을 고찰한 후 디지털무역

의 핵심 쟁점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Lin Xiao and Hyuk-Ku Lee(2021)은 글로벌 디지털무역의 발전과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과 일본의 디지털 무역의 전략적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중심 경제 시대에서의 특정 데이터 관련 정책을 전략적 무역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전략적 무역정책이 데이터 중심 경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아시아 국가의 다수의 사례를 활용하여 고찰한다.

II. 디지털 무역의 개념과 디지털 무역 규범

1. 디지털 무역의 개념

디지털 무역의 정의는 인터넷(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상품과 서비스의 매매거래이다. 여기서 ‘거래(transaction)’는 물물교환(barter trade)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된다.²⁾ 즉, 디지털 무역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화폐 교환이 요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구글 검색서비스도 디지털 무역에 속한다. 직접적인 화폐 교환은 없지만, 인터넷에서 데이터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거래이기 때문이다.³⁾ 디지털 무역의 정의 자체에는 지리적 범위 제한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상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가 국내에서 일어나든 국경 간 일어나든 관계없이 모두 디지털 무역의 범주에

2) 물물교환 개념을 포함하는 디지털 무역의 정의를 모든 국가가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생각하는 디지털 무역은 인터넷을 통한 상품거래에 가깝다.

3) 디지털 서비스 거래가 성사되려면 양방향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디지털 무역은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조건이 된다. 확장된 디지털 무역의 개념은 데이터 무역(trade in data)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속한다. 다만 디지털 무역·전자상거래에 2개국 이상이 관여된다면 국경 간 디지털 무역·전자상거래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서술이며 불필요한 혼동을 줄일 수 있다(Lee Kyu-Yub et al., 2021).

국제무역 체제는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이 잠정 발효되던 1948년 당시에는 상품 관세 인하가 통상협상의 주요 사안이었고 1970년대 동경라운드부터 비관세장벽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상품무역을 규율하는 부속협정이 발전하였다. 상품무역을 규율하던 GATT 체제는, 1980년 중반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서비스무역과 지식재산권 협상을 거치면서, 서비스무역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규범을 포괄하는 WTO 체제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상품무역 체제에서 출발해서 서비스무역 체제를 포괄하는 협상 역사를 거치면서, 무역 규범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분하는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하게 되었다.

국제무역 체제의 이분법적인 구조로 말미암아 디지털통상 규범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쟁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Lee Jae-Min, 2018). 가장 대표적인 쟁점은 전자상거래 조항에 도입된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 개념에서 비롯된다. 국가들의 개방 약속이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마다 다르고 특히 서비스무역의 개방 분야와 수준이 국가마다 천차만별이므로, ‘디지털 제품’이 상품인지 서비스인지의 판단은 국가가 기존에 합의한 개방 의무와 민감하게 맞닿아 있다(Kim Min-Jung, 2021).

다만, 디지털 무역의 정의·상거래형태나 취급에 관하여, 의견일치가 된 개념이나 세계 공통의 규범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배경에는 ① 급속히 진전하여 다양화·복잡화하는 디지털 무역의 대상이나 구조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곤란하며, ② 디지털공간에서의 국외투자·서비스제공과 디지털무역의 특성과 디지털 무역을 둘러싼 선진국간의 정황에 차이가 있으며, ③ 디지털 경제가 미성숙한 개발도상국이 국내 산업 보호의 관점에서 논의를 촉진하는 데 소극적인 상황과 같은 각국의 정치

및 경제적 사정이 있다.

한편 디지털 무역은 디지털 데이터에 의해 추진되지만, 디지털 데이터는 ICT 산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제조·서비스를 위한 요소 투입으로서도 중요하다. 국경간의 데이터 이동은 극적으로 확대되어 2005년에서 2014년에 45개의 요소로 증가했다(즉 2005년 4.7TB에서 2014년 211.3TB로 증가)(UNCTAD, 2019). 게다가 상품의 국제무역의 12% 이상은 국경간의 전자상거래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Meltzer, 2020).

예를 들어, 디지털 플랫폼이 수집하는 개인 정보는 기업에 상업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종류의 개인 정보는 Google 및 Facebook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에서 온라인 광고에 사용되었으며 2018년에는 1,78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Gröne et al., 2019). 데이터 브로커(Data Broker)⁴⁾는 개인정보를 은행 등의 기업에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연간 2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달성했다(Gröne et al., 2019).

더욱이, 디지털 플랫폼,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해 제공되는 데이터 서비스는 중소기업(SME)이 생산성을 높이는데 유익하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데이터 보존, 컴퓨팅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유료로 대여하는 데이터 센터이다. 기업에 있어서 데이터를 수집·정리하는 것은, 시간이나 비용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소매점이 판매 데이터 외에 재고 데이터, 물류 데이터 및 고객 데이터와 같은 다른 데이터 세트를 수집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하며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해야 한다. 이 점, 데이터의 보존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제3자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거의 전 용량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입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최소한 수준에서 사용을 시작할 수 있으며 요금도 사용에 따라 부과된다(Qian, 2020).

이러한 서비스는 자연 언어 처리, 음성 인식, 얼굴 인식, 지식 그래프, 지능형 추천 및 기타

4) 데이터 브로커란 정보를 수집해 그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거나 재판매하는 기업, 혹은 개인을 말한다.

AI 관련 기술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SME가 늘어나면, 그 플랫폼은 다른 그룹에서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도 매력력이 증가한다. 이는 SME의 존재감의 증가에 의해 플랫폼이 보다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Qian, 2020).

한편 전략적 무역정책은 경제의 불완전 경쟁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기업에 가격 설정이나 생산 수준에 대한 전략적 행동을 취할 여지가 없는 완전 경쟁과 달리 불완전 경쟁 상황에서는 기업은 생산이나 가격 수준의 선택 등 여러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전략적 무역정책의 요점은 관세·보조금 등 상업정책에 대한 기업·정부의 대응이 타국 기업의 수익·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되어 있다(Brander and Spencer, 1985).

불완전 경쟁 외에도 전략적 무역 정책이 타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또 다른 이유는 외부 효과에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입지 결정에 의해 많은 기업이 같은 행정 구분을 선택하면 플러스의 외부효과가 생긴다. 기업은 같은 행정 구분에 있는 다른 기업의 아이디어, 자원, 인체로부터 이익을 얻기 쉬워진다.⁵⁾ 예를 들어, 정부는 다른 국가를 희생하여 제조 생산의 점유율을 넓히기 위해 특정 관세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Qian, 2020).

불완전 경쟁과 입지 외부성의 상황에서 경제에 다중 형평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정책 개입은 발생하는 형평을 결정할 때 타당한 수단이 된다. 즉 형평이 생기는 것은 초기 조건, 거래 비용, 어떠한 종류의 정책 개입이 이루어져 왔는지에 의존한다. 즉, 정책 개입을 통해 경제를 특정 형평에 이르게 할 수 있다(Hoff and Stiglitz, 2001).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국제무역에 관한 주요 문헌에 따르면 전략적 무역정책이 유용할 경우 고도로 의존하는 상황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Eaton and Grossman (1986)은 보조금의 전략적 사용은 시장 구조에 크게 좌

우된다고 설명한다. 원칙적으로 전략적 무역정책은 복지를 증진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문자 그대로 찬부가 나뉜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의 보고서 “East Asian Miracle”에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국가의 역할이 물가 상승률 관리, 인적자본 축적 등 여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 무역정책이나 산업정책과 같은 전략적 개입은 “전반적으로 기능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World Bank, 1993).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2차 세계대전 후의 경험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견해도 있다. 종종 인용되는 것은 철강업과 섬유업으로, 1960년대 한국과 대만 정부는 일본의 높은 생산성을 상회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보조금을 활용했다(Wade, 2004).

이러한 정책은 그 변화에 따라 기업 차원에서 전략적 대응을 가져오기 때문에 전략적 무역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에서의 또 다른 사례에서 정부 보조금 지급은 수출 목표 달성의 조건이었다(Amsden, 1992).

2. 디지털 무역 규범

국경 간 다양한 디지털 정보 및 디지털콘텐츠의 이동, 디지털 방식을 기반으로 한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 등 디지털 무역거래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무역 규범들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게 되어 개별 국가들은 디지털 무역규범에 대한 자기 다른 기준들을 제정하여 적용하면서 디지털 무역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국제규범의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Lee Jae-Young, 2020).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은 디지털 무역거래 관련 제약을 최대한 제거하고, 데이터의 활용도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규범 정립 및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사이버 주권이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중시하는 국가들과 입장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Kim Nam-Jong, 2019).

5) 새로운 무역정책에 따라 정부는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해 기업의 입지 결정을 변경하는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Ossa, 2011).

WTO에 통보된 RTA에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디지털 무역관련 규범을 찾아보면, 독립된 전자상거래 혹은 디지털 무역거래에 대한 장(Chapter) 또는 규정(Provision)을 갖고 있는 RTA는 69개이고, 전자상거래 장 등이 없는 경우도 21개로 나타났다. 반면 종이 없는 무역거래나 디지털 권리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Wu, 2017).

디지털 무역거래의 규범과 관련하여 종이 문서와 전자 문서의 법적 동등성을 규정하는 전자거래법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매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중요한데, UN에 소속된 194개 회원국 중 79%만이 제정하였으며, 데이터가 국가간에 이동함에 따라 파생되는 이슈를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 소비자 보호 관련 규범은 52%,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관련 규범은 58%로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관련 법의 제정은 전자거래법보다 늦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무역거래와 관련된 국내규제와 정책 수단은 데이터 이동을 수반하는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와 연관성이 있는데, 최근에 등장한 디지털 신무역규범으로는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데이터의 지역화 조치 금지, 소스코드공개 금지, 디지털 불법 복제, 인터넷 중개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위반 등이며, 시장접근이나 투자조치를 통해 디지털 재화나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통적인 무역 규제로는 면세한도, 전자결제, 정부조달, 기술표준, 외국인 지분 제한, 로컬콘텐츠 요금, 세금과 수수료 부과 등이다(Lee Kyu-Yub and Min-Ji Kang, 2019).

향후의 디지털 무역 이니셔티브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고민도 필요하다(Gallaher, 2020). 지역 및 양자간 디지털협정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다자간수준으로 진전이 필요하며 이에 WTO 차원에서 디지털무역을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성명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분야의 논의는 주로 지정학적 긴장고조, 유행병 관련 위기, WTO 내의 제도적 우선순위의 이동으로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Jeon

Jeong-Hwa, 2022).

따라서 디지털 제품의 법적 모호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한·미 FTA는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면 FTA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였다. 한편, 한·미 FTA는 ‘디지털제품’에서 국경 간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및 투자 사안을 명시적으로 유보하였다. 한·미 FTA의 ‘디지털 상품’에 대한 정의는 이후 다른 디지털 통상 규범에도 도입되었다.

그런데 협정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CPTPP 전자상거래 조항은 ‘디지털 제품’ 정의에서 ‘전달매체에 고정되는지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전달 매체’에 대한 정의를 누락시킨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CPTPP 제14.1조). 그리고 디지털 제품에는 디지털 화폐가 포함되지 않고 금융기관과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CPTPP의 ‘디지털 제품’ 정의와 적용 범위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디지털무역 조항에도 그대로 채택되었다. 다시 말해서, 전달 매체에 대한 언급이 없고, 디지털 화폐를 포함하지 않으며, 국경간 서비스무역, 투자, 금융서비스 조치가 규율대상에 제외된다. 이러한 적용 범위는 미·일디지털무역협정(United State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 USJDTA)⁶⁾ 제1조(가)항, 디지털경제협력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⁷⁾ 모듈3 제3.1조, 싱가포르·호주 디지털경제협정(Australia-Singapore Digital Economy Agreement: ASDEA)⁸⁾ 부속서 A 제1조(가)항,

6) 2019년 11월에 타결되어 2020년 1월에 발효된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USJDTA)은 CPTPP 및 USMCA 처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협정으로 처음 도입된 사례이다. 디지털 무역의 자유화 추진을 위해서 핵심 규정을 의무화 규정으로 도입하였고 일부 규정은 기술적 장벽방지를 위해 강화되었다.

7)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 무역 규범화 노력에 맞서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뉴질랜드, 칠레) 국가들의 주도로 데이터의 혁신이나 디지털 신원 등과 같은 디지털 경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DEPA는 2020년 1월 타결이 이루어진 후에 2021년 1월 발효됨으로써 디지털 무역에 있어 최초의 복수 국간 협정이다.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KSDPA)⁹⁾ 등에도 그대로 채택되었다. 2013년 협상을 개시하여 8년 만에 타결된 최대 규모의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총 20개의 장, 17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ASEAN의 개발도상국들이 참여한 협정으로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규정은 자유화 수준이 낮다. RCEP의 전자상거래 장(Chapter 12, Electronic Commerce)는 CPTPP와 비교하여 자유화 수준은 낮게 평가되고 있다.

한편 디지털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원칙과 규범을 논의하는 포럼을 제공하고 있다. OECD 이니셔티브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향상하고 공유하기 위한 일반원칙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으며, 디지털화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문제에 대한 다자간 합의솔루션에 대하여 여러 국가간의 협상의 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Jeon Jeong-Hwa, 2022). 또한 디지털경제와 산업의 발전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우려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높은 수준의 원칙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국경간 개인정보보호규칙(Cross Border Privacy Rules system: CBPR)¹⁰⁾ 등의 제시로 잠재적인 미래의 다자협정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PEC CBPR은 국가간 개인정보보호 규칙 시스템 중 하나로서, 국가의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

며, EU의 일반데이터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¹¹⁾ 체제에 대응하여 보다 포괄적 하향식 접근방법을 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Jeon Jeong-Hwa, 2022).

III. 한국·중국·일본의 디지털 무역 발전

1. 한국 : 플랫폼 경제 촉진

디지털 플랫폼은 세계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전자상거래, 전자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의 수익은 2019년 세계 GDP의 4.4%에 해당하는 3조 7,500억 달러에 달했다(ADB, 2021).

디지털 플랫폼은 규모에 관한 수확 체증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의 일부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AI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지원하는 정책에 따라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기업의 생산성은 높아진다. 또한 AI 서비스의 질은 플랫폼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늘어날수록 향상된다(Qian, 2020).

또한 디지털 플랫폼은 외부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어진 플랫폼에서 어떤 그룹의 성공은 동일한 플랫폼의 다른 그룹의 수확을 증가시킨다. 특히 공장내의 기기와 소프트웨어 앱과의 연결을 통해 디지털 산업 플랫폼은 자동예지보전과 밸류체인이 디지털 통합과 설계·생산에 걸맞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Borangu et al., 2019).

2018년 한국 정부는 총액 45억 달러에 이르

8) 싱가포르는 호주와도 디지털 경제 협정을 맺고 7개의 MOU를 체결하며 두 중견국 간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SADEA는 2020년 8월에 타결되었다. CPTPP, USMCA 및 USJDTA와 형태나 수준에 있어 비슷한 유형의 규범이 도입되었다.

9) 양측은 2021년 12월 한·싱가포르 DPA 타결 선언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 11월 21일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간 협상 절차를 완료하였다.

10) CBPR은 2011년 APEC 회원국이 APEC Privacy 9원칙을 근거로 개발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 체계로, 회원국 간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전 체계를 마련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11) GDPR은 EU 회원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2016년 제정되어 2018년 시행되었다. GDPR은 11장 9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GDPR은 EU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해외에서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는 자금을 거출하고 플랫폼 경계를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을 발표했다(Yoon Ja-Young, 2018). AI 관련 서비스용 플랫폼과 수소 연료 전지의 공급망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라는 두 가지 플랫폼이 정책의 큰 초점이다(Token Post, 2018). 플랫폼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상세한 정책에는 AI 관련 서비스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급 및 디지털 무역을 위한 플랫폼 촉진이 포함된다(Qian, 2020).

정책에는 수소 연료 전지의 생산, 보관, 유통 및 사용에 대한 공급망 지원(Token Post, 2018) 이 외 수소 연료 자동차의 보조금의 지급이나, 수소 스테이션의 확충(Randall, 2019)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공급망은 정책의 지원을 받아 공급망 내의 기업에 이점을 제공하는 외부성을 내부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국은 일본이 USJDTA에서 디지털 무역 규범에 대한 '예외적 조치' 권한을 확보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규정에 대한 일반적 예외 적용시 GATT 및 GATS 중 어느 협정을 기반으로 할지 또는 완전히 새로운 예외 규정을 창설해야 하는지 아직까지 그 태도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는 디지털 무역이 상품 또는 서비스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와도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WTO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무역규정을 포함하는 많은 RTA들이 해당 규정에 이른바 '일반적 예외'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José-Antonio and Robert, 2017). 대부분의 RTA에서는 GATT 및 GATS의 일반적 예외조항 모두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이 체결하는 RTA이나 멕시코·중앙아메리카 FTA 등 일부 지역무역협정에서는 GATS 상 일반적 예외규정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Trachtenberg et al., 2021).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를 포함한 대부분의 FTA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에 GATS 일반적 예외만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싱가포르 및 한·콜롬비아 FTA의 경우 전자상거래에 GATT 및 GATS 상 일반적 예외규정이 모두 적용되도록 하는 반면, 한·베트남 FTA에서는 어떠한 일반적 예외도 원용하

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RCEP은 한국이 최초로 맺는 메가 FTA다. 한국은 COVID-19 위기로 세계 무역과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 교역 상대가 모여 있는 성장 가능성 높은 역내 시장이 FTA로 통합되는 점에 큰 의의를 부여한다. RCEP은 한국에게 사실상의 한·일 FTA 체결을 의미한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경제대국 1-5위(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되었다. 한국에게 RCEP은 일·중 FTA 체결도 의미한다. 따라서 그간 한국이 중국에서 일본에 비해 누렸던 경쟁우위도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 그로 인한 세밀한 효과는 추후 품목별 양허 일정 및 수준 비교를 통해 알 수 있겠으나, 기존에 한·중·일 FTA를 주저했던 중요한 이유 하나가 사라짐에 따라, 향후 대중 전략 및 한·중·일 FTA 추진 전략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2. 중국: 데이터 인프라 향상

5G 등 데이터 인프라의 발전에 따라 기업 차원의 전략적 결정이 변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데이터 통신 속도의 현저한 향상, 데이터 이동과 데이터 공유의 축진이 5G에 의해 가능해진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져오는 AI 기반의 많은 서비스에는 데이터 보존 센터의 가용성에 의존하는 면도 있다. 향상된 데이터 인프라는 국내 디지털 관련 경제 활동을 더욱 지원할 것이다(Qian, 2020).

데이터 연합 또는 플랫폼 경제 지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인프라 구축은 전통적인 무역 정책이 아니다. 그러나 데이터 인프라는 기업 차원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 평가를 변경할 수 있다. 중국은 데이터 인프라의 발전에 관한 일련의 정책 이니셔티브를 실시했다. 2020년 5월에 발표된 정치활동 보고에서 5G, 빅데이터 보존센터, AI, 인더스트리얼·인터넷 등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데이터 인프라 구축은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부분적으로 받고 있지만 민간 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하이에서는

Table 1. "New types of infrastructure" investment by 2025 (trillion RMB)

	Direct investment	Total investment
5G	2.5	5
Big data storage centres	1.5	3.5
Artificial intelligence related infrastructures	0.22	0.4
Industrial internet	0.65	1
TOTAL	4.87	9.9

Source: Qian (2020).

2020년부터 2022년에 걸쳐 새로운 유형의 인프라에 제공되는 투자 총액의 4분의 3은 민간 부문이 투입할 예정이며 2,100억 위안을 초과할 전망이다(Qian, 2020).

2020년 3월 중국의 산업정보화부 싱크탱크, 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CCID)은 데이터 인프라와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총액이 2025년까지 약 10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Table 1.).

중국이 GVC의 명실상부한 허브로 부상한 상황에서, RCEP의 실질적인 협상 과정은 중국보다 ASEAN이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RCEP은 중국을 수혜자로 만들었다. 전략적 측면까지 포괄한다면 최대 승자다. 중국은 일본이 TPP 참가에 속도를 내고 미국 탈퇴 뒤에는 일본 주도로 CPTPP가 발효되자 이를 견제하고자 RCEP 참가에 힘을 쏟았다. 중국은 마지막까지 상품양허와 지재권 규범 협상에서 고전했으나 최종적으로 전자에서 통 큰 양보를 하는 반대급부로 후자에서 국유기업, 지재권, 환경, 노동, 디지털 무역 등 자국에게 불리한 분야의 규범을 거의 제외하여 관세철폐 위주의 FTA를 체결하는 전략으로 양허이익의 균형을 이뤄냈다.

중국이 최근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수용한 디지털 통상 분야 규범은 RCEP에 포함된 전자상거래 조항이다. RCEP에도 국경 간 정보 이동 조항, 컴퓨팅설비 위치 조항 등과 같이 디지털 통상의 핵심 요소도 포함되어 있지만, RCEP의 규범은 당사국에 정책권한을 부여하는 요소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Kim Jee-Eun, 2022).

RCEP 협정은 국경 간 정보 이동 및 컴퓨팅 설비의 사용 또는 위치에 대해 당사국이 이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한다. 다만 두 조항은 모두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와 필수적인 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음을 함께 명시하고 있어 당사국에 충분한 정책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어 유지 및 도입되는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은 있지만, 당사국은 정당한 공공정책 도입을 결정할 수 있고 그 정책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또한 당사국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CPTPP, USMCA, DEPA 등 다른 무역협정과 비교하여 공공정책 목적을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가 보다 수월하게 된다(Kim Jee-Eun, 2022).

또한 당사국이 필수적인 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스스로 도입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조치가 다른 당사국에 의해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정책 도입에 대한 충분한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RCEP은 소스코드에 관한 규범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의 역량을 갖추고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수준에 그친다. 다수의 조항이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또는 강제성 있는 보장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3. 일본: 데이터 연합 형성

데이터 연합의 형성은 기업의 전략적 결정을 변경하기 위해 수행되는 정책 방침이다.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시스템에 직면하여 기업은 각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거나 일부 비즈니스 활동을 이전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에서 철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 수준의 결정은 산업의 경쟁력과 시장 역학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데이터 연합의 형성은 단일 데이터 시장을 형성하고 시장 규모, 데이터 기준의 제정에 유의한 효과 이외에 시장 구조에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Batikas et al., 2020). 데이터 연합의 형성은 전통적인 무역 정책(예: 보조금, 관세 등)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지만 동일한 목적을 수행한다. 국내기업의 시장 진입 확대와 국내기업에 의 보다 많은 자원의 배분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한 결과 국내기업은 국제시장에의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Qian, 2020).

비개인적인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은 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럽 연합(EU)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2019년 5월, EU는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데이터 유통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제정했다. 이 규칙은 EU에서 비개인적 전자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틀을 만드는 것으로, EU 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는 목적이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8).

이 기준 틀을 근거로 일본은 EU와의 데이터 연합 형성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2018년 EU에서 EU GDPR의 적용이 시작됨에 따라 일본과 EU는 상호 데이터 규제를 확인했다(Skadden, 2018). 2019년 1월 23일, 유럽위원회(EC)는 일본과의 충분성 인증(즉, 데이터 보호의 충분한 수준)을 발효했다. 이것은 EU에서 GDPR의 적용을 시작한 후 EU와 제3국이 데이터 보호의 충분한 수준을 상호 동등하다고 인정한 최초의 예이다.

일본의 RCEP 체결 속내는 단선적이지 않다. 경제와 안보 양면의 목적함수는 일견 상충하는 측면도 존재해 일본이 최종적으로 RCEP 체결에 합의하기까지는 복잡한 섀범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측면만 보자면 단연 일본은

수혜자다. 일본은 미·중 갈등이 날로 첨예화되자 완충지대가 필요했으며, 특히 RCEP을 통해 FTA 비체결국이자 상대적으로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에의 시장 접근성을 증대시킬 필요성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RCEP을 통해 세계 5대 메가 FTA(한·중·일 FTA, RCEP, CPTPP, TTIP, 일·EU FTA) 중 참가 가능한 4대 메가 FTA에 모두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메가 FTA 네트워크의 허브로 부상하였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 미·일 상품무역협정(TAG) 및 USJDTA도 체결하게 되어 WTO 내에서 새로운 무역규범 제정 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다.

2019년 2월에 발효된 유럽·일본 EPA의 디지털 분야 규정에는 ‘국경간 데이터의 자유 이동 확보’의 항목이 없어, 발효한 지 3년 이내에 검토를 시작하기로 한 바 있다. 유럽·일본 EPA에서도 추가할지 여부에 대해 사무적 협의에 돌입하였다. CPTPP와 USJDTA 등에서는 이미 규정되어 있다. 세계의 디지털 관련 규칙을 주도하고자 하는 일본은 유럽·일본 EPA에도 반영하기를 희망하지만, EU는 GDPR에 엄격한 제한이 있어 EU 내의 합의형성이 가능할지 불분명하다.

2020년 발효된 USJDTA은 디지털 무역에 관한 가장 최신 규범이면서 동시에 가장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고 있다(Kim Jung-Kyun and Dong-Chul Kwak, 2019). USJDTA은 디지털 공간에서 현지화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무역장벽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차별 원칙 및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등 주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USJDTA은 한·미 FTA에는 없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원칙 규정이 있다(USJDTA 제8.1조). 또한 CPTPP 또는 USMCA의 전자상거래 장(chapter)에는 없다가 USJDTA에서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현지 컴퓨터 설비 설치 금지(데이터 현지화 조치 금지)’ 규정과 ‘암호를 사용한 전기통신기술상품’ 규정이 등장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USMCA 및 CPTPP와 비교해 볼 때 USJDTA에서는 CPTPP 제14.9조¹²⁾ 및 USMCA 제19.9조에 규정되어 있던 ‘중이 없는 무역’ 조항, ‘인

터넷 이용 및 접근원칙' 및 '협력' 규정과 CPTPP 제14.12조에 포함되어 있던 '인터넷 접속료'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개도국과의 협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협력과 관련된 내용이거나 다소 기초적 수준의 디지털 규범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강국인 미국과 일본이 굳이 별도의 조약을 통해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USJDTA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분쟁 해결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USJDTA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양자협정의 등의 제도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¹³⁾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원칙이라던가, 전자적 방법에 따른 정보의 국경 간 이동 등 대부분의 협정상 의무가 강행규정의 형태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의 불복방안이 없다. 해당 협정 위반 시 해결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이다.¹⁴⁾

IV. 디지털 무역정책의 비교

1. 한국

우리나라는 디지털 상품·서비스 무역 확대를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 위한 국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뉴딜' 등 정책을 발표하고 디지털 신제품 및 신규서비스를 창출하고자 산업 내 데이터·5G·AI 융합을 가속화 하는 등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의 분야에 총 사업비 58.2조원을 투자하여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공공 데이터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등 스마트 물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존 산업의 5G 및 AI 융합을 확산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료·SOC 등 분야에 비대면 인프라를 구축하여 IoT·AI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비즈니스 컨설팅 등 디지털 서비스 분야의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기술 등을 활용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플랫폼 구축을 통해 무역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MOTIE, 2019)하는 등 디지털 무역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비대면 솔루션 수출 지원을 위한 'K-ICT Untact Business Platform' 구축 및 'ICT Cyber World'를 개최하고 있다. 이것에는 ICT 제품 및 서비스의 시연, 솔루션 교육, 수출 상담 원스톱 제공, 온라인 전시회 및 해외 매수인 상담회 개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신남방·신북방 시장을 중심으로 디지털 무역 플랫폼 수출 및 국가별 컨설팅 서비스 등 형태의 해외 진출도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Son Chang-woo and So-Young, Park, 2020)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연계하여, 향후 FTA에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비즈니스 원활화를 위한 국제 규범을 공동 모색하고 국내제도를 개선하는 등 디지털 통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EU 등의 디지털경제권 형성을 고려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중견국과의 디지털동반자협정(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DP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원활화, 온라인소비자보호,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 등을 위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통상 규범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국가이다. FTA를 통해 이미 미국, 중국, 호주, EU 외에도 다수의 국가와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 12월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의 타결을 선

12) CPTPP뿐 아니라 한·미, 한·중 FTA 등 많은 지역 무역협정들이 전자무역행정문서를 종이형식 문서와 동등한 것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hung Chan-Mo, 2017).

13) 한·중 FTA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FTA상 분쟁해결절차를 따르지 않도록 명시할 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제시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Kim Yun-Keun and Bok-Jae Park, 2017).

14) 더욱이 미국과 일본 간에는 양자투자보장협정도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한 해결도 불가능하다.

Table 2. Korea's Digital Trade Policy Promotion Direction

<p>① Preemptive response to establishment of digital trade rules reflecting the interests of our indust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ing the <Digital Trade Negotiation Direction> reflecting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 Reflecting Korean interests in multilateral and bilateral trade negotiations <p>② Lead global digital trade issu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eating a fair trade ecosystem on a huge global platform ·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system to prevent digital rights infringement <p>③ Support for market expansion of Korean companies through multilateral and bilateral trade cooper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tablishment of Digital Alliance · Strategic country-promising industry matching cooperation project promotion <p>④ Strengthen digital trade foundation and advance domestic syste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uring statistics and building an industry joint response network · Support for advancement of domestic system

Source : MOTIE (2019).

언한 후 2022년 11월 21일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간 협상절차를 완료하였다.

디지털 통상 규범의 적극적인 수용으로 인한 디지털 분야 무역장벽 완화를 통해 해외 진출 기업들의 비용 완화, 규제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국가 간 또는 기업 간 신뢰를 형성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하나 모든 협정문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과 국가별로 선호하는 규범의 형태가 상이하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2020년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5G 인프라 구축 확대와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을 담은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데이터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개정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가명정보 개념도 도입했다. 싱가포르와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 협상을 시작했고,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¹⁵⁾ 논의에도

참여 중이다(Kim Heung-Jong, 2020).

그런데 디지털 뉴딜정책과 디지털 무역 정책 사이에 연계성이 부족하고, 디지털 뉴딜의 5년 정책에 상응하는 디지털 무역 정책이 없다. 데이터3법이 통과됐지만,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조항에는 규정의 변화가 없다. 데이터3법에 따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발표된 시행령에도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독립성을 갖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출범이 EU GDPR 적정성 결정 때 도움이 되겠지만, EU가 지난 2년 동안 GDPR을 근거로 400건 이상의 위반사태에 과징금을 부과된 사실은 우리 기업의 GDPR 준수 의무를 상기시킨다. 한국의 디지털 무역 규범은 한·미FTA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한국이 CPTPP 회원국과 가입 협상을 한다면, 디지털 무역 장(chapter)이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기 위해 제도 정비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Kim Heung-Jong, 2020).

하거나 소멸하는 것(Base Erosion)을 말한다. OECD와 G20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따른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9개 국가가 참여하는 OECD/G20 IF를 출범 시키고,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국제조세체제의 원칙(디지털세)을 논의하고 있다.

15) BEPS는 기술발전과 글로벌화의 내용과 속도에 맞게 재정비되지 못하고 뒤쳐진 각국의 조세체제와 조세 조약의 사각지대를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득을 이전하고(Profit Shifting) 절세노력을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과세당국의 세원기반이 감소

2. 중국

중국은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며, 중국 내 국가 안보 및 질서 유지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사이버 주권(Cyber Sovereignty)에는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 대한 공공 정책 수립 권한은 온전히 개별국가에 있다는 점에서 외부로부터 간섭이 없어야 하며, 국가별 자주적인 네트워크 발전 방식 및 관리 모델을 인정해야 함을 담고 있다(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1). 사이버 보안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이동 및 서버의 위치가 제한될 수도 있다. 중국 내 수집, 생산 및 가공된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 그리고 핵심정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보호가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중국 내 저장 또는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 입장이다(Yoon Sung-Hye, 2020).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터 이동과 관련하여 강력하게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중국은 WTO에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제안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은 채택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요한 이유는 중국은 현재 데이터 이동에 대해서 디지털 저장설비의 현지화 요구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6월에 발효한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에 따르면 핵심 정보기반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중국 내에서 운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나 중요 데이터는 중국 내에 저장해야 하며 이전을 원하는 경우 적절한 보안 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은 EU의 GDPR 구성과 내용에서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Kim Yeon-Dae and Jae-Won Hong, 2021).

네트워크 안전법은 중국에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거나 창출된 중국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중요한 데이터의 경우 중국 현지의 서버에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합법적인 사업상의 이유로 인해서 데이터를 중국 외부에 있는 국외 법인이나 조직에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국의 사이버 보안관리 당국과 중국 국무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보안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데이터 서버의 현지화와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Kim Yeon-Dae and Jae-Won Hong, 2021).

아울러 개인의 정보를 처리하고자 한다면 먼저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정보의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며 자발적이거나 또는 명시적으로 정보처리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의 목적이나 처리방식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이것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특별한 정보라고 인식되는 경우는 국외로 이전을 제한하고 있다(Kim Yeon-Dae and Jae-Won Hong, 2021).

3. 일본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EU의 GDPR에 준거한 규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모든 물건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IoT의 경우 제조업에 강점을 가진 일본에도 기회가 있으므로, 산업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통하는 규칙을 만들어 성장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나 사이버 보안 대책이 미흡한 국가·지역, 기업으로의 데이터 이동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해외 이동에는 엄격한 승인을 거치고 투명성도 높이고자 하고 있다.

특히 2020년 COVID-19 팬데믹은 ‘서면·날인·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일본의 전통적이면서 아날로그 방식인 제도와 관행을 디지털화해야 한다는 의식을 확산시켰고, 급기야 2021년 9월 디지털청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한편에서는 2017년 1월 출범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자 일본에서도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 과정에서 일본 산업의 디지털

화·디지털전환과 디지털인프라 정비는 일본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책 의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일본정부가 디지털정부 구현, 나아가 세계 최첨단의 IT국가 구현을 표방한 시기는 2000년 “IT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2001년 e-Japan전략을 발표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2006년 IT신개혁신략, 2013년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선언, 2017년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선언·관민데이터 활용추진 기본계획, 2019년 세계 최첨단 디지털국가 창조선언·관민데이터 활용추진 기본계획, 2020년 2020 IT신전략을 발표하면서 중점 추진분야로서 ‘전자행정(전자정부·전자지자체)’ 실현을 빼놓지 않았다. 특히 2016년 제정된 관민데이터 기본법(정식 명칭은 “관민데이터활용추진기본법”)은 규제개혁, 행정절차시 온라인 이용,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규격정비 및 호환성 확보, 민관 정보시스템 연계기반 정비, 마이넘버 카드의 보급·활용 촉진 등 일본정부가 추진해야 할 디지털정부 구현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Enomoto, 2020).

일본정부가 디지털산업 육성정책을 명확히 제시한 것은 경제산업성이 2021년 6월 발표한 ‘반도체·디지털산업 전략’이다.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디지털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으로, 첫째 경제안전보장 시스템을 갖춘 클라우드 인프라 산업 육성, 둘째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육성을 통한 디지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방향은 산업·공공·사회 인프라 영역에서 정보시스템이 클라우드로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안전보장 관점에서 시스템의 신뢰성·안전성에 장애가 되는 기술적 요인을 제거하는 연구개발과 안정적으로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체제 구축을 강조하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방향과 관련해서는 세계의 클라우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반면 일본의 IT서비스 사업자는 대규모 시스템의 수탁개발에 강점을 갖고 있지만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에서는 존재감이 희박한 점을 들면서 국내 IT서비스 산업을 디지털산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METI, 2021).

한편 GDPR은 EU에서 규정된 규범이지만 일

본국내기업도 그 적용을 받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U에 자회사·지점·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일본 기업, 일본에서 EU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본 기업, EU로부터 개인 데이터의 처리에 대해 위탁을 받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일본 기업 등도 적용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제약으로서는 일본 기업·그룹의 EU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의 인사정보를 일본 국내에서 관리할 수 없거나 EU에서의 서비스제공을 할 때에는 서비스 이용자의 고객정보를 일본 국내에서 입수하여 분석·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디지털 무역의 핵심적 요소인 인터넷과 국경간 이동하는 데이터·정보는 국제통상과 일본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더욱이 그 중요도를 증대시키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 혜택을 최대한 향유하기 위한 법적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되어 있지만, 그 한편으로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안 등 여러 국내의 공공정책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유지하는 것도 요구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현지화 규제 그 밖의 형태로 규제적 개입이 실시되고 있다.

4. 소결

일본 등 CPTPP 참여국은 디지털무역거래에 있어 “TPP3 원칙”(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 데이터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 코드의 공개·이전 요구의 금지)을 준수하고 있어 특히 이 원칙을 중요시하고 있다. 한편 중국, 한국에서는 RCEP 이전에 체결한 무역협정에서 “TPP3 원칙”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조항의 취급은 RCEP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중국은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며, 중국 내 국가 안보 및 질서 유지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중국이 추구하는 디지털 통상정책에서 표면상 드러내는 목적은 국가안보, 사이버 보안 등 공공정책의 목적 달성이나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목적은 국내산업보호이다. 실제 중국이 사용하는 디지털 통상정책의 수단은 보호무역주의 조치이며, 그 중심에는 강력한 데이터 규제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이 최근 무역 협정 체결을 통해 수용한 디지털 통상 분야 규범은 RCEP에 포함된 전자상거래 조항이다. RCEP에도 국경 간 정보 이전 조항, 컴퓨팅 설비 위치 조항 등과 같이 디지털 통상의 핵심 요소는 포함되어 있지만, RCEP의 규범은 당사국에 정책 권한을 부여하는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USJDTA에서는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디지털 상품에 대해 다른 종류의 디지털 상품에 제공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은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식에 의한 것만을 이유로 법적인 유효성을 부정하여서는 안된다. 어느 당사국도 대상자의 사업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공정책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조치를 제외하고 정보의 전자수단에 의한 국경 간의 이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일방 당사국은 자국에서의 수입·판매 등의 조건으로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와 알고리즘의 이전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어느 당사국도 암호를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상품의 판매와 수입의 조건으로 제조자에 대해 암호법에 관한 정보의 이전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이 EU나 중국이 지향하는 디지털 통상정책의 방향을 따르는 것은 개방이나 규칙 기반과 멀어지는 방향을 선택하는 셈이다. 한국이 EU식으로 데이터규제를 정비해 나가는 것은 한국 내 디지털 무역 기업에도 경제적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교역상대국 기업에도 비용을 유발하는 선택이 될 수 있음에 늘 유의해야 한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표방하면서도 데이터 규제를 강화하면 한국 디지털 시장의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이 중국식으로 디지털 보호무역주의를 선택한다면 문제는 더욱 악화된다. 데이터의 국외이전 제한이나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정당화하려는 국내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힘을 받게 된다. 해외 기업이 한국 디지털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무역장벽은 더 높아져 한국 디지털 무역환경에 대한 외부의 비판적 평가는 피할 길이 없

다. 한국의 입장에서 국내 디지털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통상정책을 고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중장기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디지털 무역 확대를 산업, 무역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국내 보완대책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정부나 기업으로서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내세우고 있는 디지털 무역 경쟁력 강화책, 즉 하이브리드형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과 초분산형 클라우드 아키텍처 개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국내 기업 육성과 함께 일본기업과의 협력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국제무역에서 디지털화는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고객에 대한 접근 촉진, 국경 간 거래 참여 비용 절감, 글로벌가치사슬(GVC)의 조정 능력 향상 등 여러 가지 이점을 수반한다. COVID-19 팬데믹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세계 경제 침체를 완화하고 웰빙을 유지하며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적 디지털 무역 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COVID-19 팬데믹으로 디지털 데이터가 더욱 확대되었다. EU의 인터넷 교환 대역폭 증가는 2019년 4분기에는 10%였지만 2020년 1분기에는 19%에 이르고 있었다(OECD, 2020). 디지털 무역은 데이터 관련 정책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제의 디지털화의 대응·강화를 위해 정부는 정책수단을 이용한다. 기업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국내 SME의 경쟁력은 디지털화나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연합에 의해 상승할 수도 있다. 그리고 데이터 인프라는 AI 관련 서비스에서 R&D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모두 기업 차원의 전략적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 무역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산업에서는 데이터를 보다 집약적으로 사용한다. 디지털 데이터를 생산 요소로 생각하면 디지털 무역은 데이터를 보다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에 더 큰 장점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정책 입안자와 관련된 점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과 같은 디지털 경제 하에서의 시장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 정책 실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데이터 중심 경제의 시대에 있어서, 데이터 관련 정책은 규모에 관한 수확체증과 외부효과를 활용하기 위해 실시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무역정책은 디지털무역과 디지털경제의 촉진에 유익할 수도 있지만, 경제성장애 필수적인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경제발전 촉진에 ‘원패턴’ 제도보다 산업정책과 무역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Chang Ha-Joon, 2011; Rodrik, 2008).

전략적 무역정책이 유리한 후생효과(즉 국민소득 증가·경제발전)를 가져올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일부 정부에는 국내산업의 경쟁력 촉진이라는 목표를 내세워 전략적 무역정책을 채택하는 강한 동기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정치경제학의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무역에 관한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전략의 선택은 종종 무역 분야에서 어떤 특정이익 집단이 형성되는지에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무역에 관한 지역협정의 목표가 달성되는지 여부는 각국의 국내 권력구조에 달려 있다.

한국·중국·일본은 지난 몇 년간 지역 통합

을 강화하고 공동의 번영, 안정성 및 지속 가능성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노력해 왔다. 더 나은 지역 통합은 국가가 상품, 서비스, 자본, 데이터 및 사람의 국경 간 이동을 방해하는 차이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반면, 규제 차이는 기업의 무역 비용 증가와 소비자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무역의 국제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세, 비관세조치의 철폐도 중요하지만, 그 바탕에 놓여있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가 간 이동과 이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데이터 현지화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는 이런 이동과 이용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디지털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GATT, GATS와 같은 WTO 규범을 잘 활용하고, 이런 노력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 새로이 부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무역 협정의 체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현재 발효되고 있는 한·미 FTA에 디지털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좋은 규정과 원칙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규정과 원칙의 확대를 위해 한·중 FTA와 같은 양자간 협정, CPTPP, WTO와 같은 다수국간 협정 혹은 디지털무역협정(DTA)과 같은 다자간 협정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DB (2021),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port 2021*, Manila: ADB.
- Amsden, A. H. (1992),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tikas, M., S. Bechtold, T. Kretschmer and C. Peukert (2020), "European Privacy Law and Global Markets for Data", *CEPR Discussion Paper*, DP14475, 1-56.
- Borangiu, T., D. Trentesaux, A. Thomas, P. Leitão and J. Barata (2019), "Digital transformation of manufacturing through cloud services and resource virtualization", *Computers in Industry*, 108,

150-162.

- Brander, J. A. and B. J. Spencer (1985), "Export subsidies and international market share rivalr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8(1-2), 83-100.
- Chang, Ha-Joon (2011), "Institutions and economic development: theory, policy and history", *Journal of Institutional Economics*, 7, 473-498.
- Cheong, Sun-Tae (2019), "A Study on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the Liberalization of Digit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15(5), 315-335.
- Chung, Chan-Mo (2017), "The Transition of FTA Chapter on Electronic Commerce: Focusing on the KORUS, Korea-China FTAs and the TPP", *IT & Law Review*, 14, 309-339.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1), *EU digital policy and international trade* (CRS Report). Available from https://policy.trade.ec.europa.eu/help-exporters-andimporters/accessing-markets/goods-and-services/digital-trade_en
- Eaton, J. and G. M. Grossman (1986), "Optimal trade and industrial policy under oligopol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1(2), 383-406.
- Enomoto, Hisayuki (2020), "Background of IT Policy: Focusing on Discussions at the Digital Agency", *Legislation and Research*, 430, 3-19.
- European Commission (2014), *Towards a thriving data-driven economy*. Available from http://ec.europa.eu/newsroom/dae/document.cfm?action=display&doc_id=6210.
- European Commission (2018), *Free flow of non-personal data*. Available from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ws/free-flow-non-personal-data>
- Gallaher, M. (2020), *Trade agreements to move the digital economy* (Visa Economic Empowerment Institute). Available from <chrome-extension://efaidnbmnfnkcehdnncjkgkhlkalegfindmkaj/viewer.html?pdfurl=https%3A%2F%2Fusa.visa.com%2Fdam%2FVCOM%2Fglobal%2Fsites%2Fvisa-economic-empowerment-institute%2Fdocuments%2Fveei-trade-agreements-to-move-economy.pdf&clen=262580&chunk=true>
- Goldberg, P. K., and N. Pavcnik (2016), "The effects of trade policy", *Handbook of Commercial Policy*, 1, 161-206.
- Gröne, F., P. Péladeau and R. A. Samad (2019), *Tomorrow's data heroes*. Available from <https://www.strategy-business.com/article/Tomorrows-Data-Heroes?gko=7b095>
- Hoff, K., and J. Stiglitz (2001), "Modern economic theory and development", in Gerald M. Meier and Joseph E. Stiglitz (eds.), *Frontiers of Development Econom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89-459.
- Hwang, Ji-Hyeon and Yong-Il Kim (2021),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of Digital Trade Norm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1(10), 93-100.
- Jeon, Jeong-Hwa (2022), "Global Digital Trade Agreement Trends and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IP-Focus*, 2022(5), 1-32.
- Jones, C. and C. Tonetti (2020), "Nonrivalry and the Economics of Data", *American Economic Review*, 110(9), 2819-2858.
- José-Antonio, M. and T. Robert (2017), "Provisions on Electronic Commerce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WTO Working Paper*, ERSD 2017(11), 3-76.
- Kato, Koji and Momomoto Kazuhiro (2019), *Comparing the "TPP 3 Principles" of Electronic Commerce and Legal Systems in China and South Korea* (Regional Analysis Report). Available from

- <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2019/13a43c86eed15d2c.html>
- Kim, Gi-Hong (2018), "An Analysis on the Concept of Digital Trade, and on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of How to Develop I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9), 1-11.
- Kim, Heung-Jong (2020), "International Discussion on Digital Trade Norms and Korea's Response", *International Trade Law*, 2020(4), 3-9.
- Kim, Jung-Kyun and Dong-Chul Kwak (2019),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the US-Japan Trade Agreement", *Trade Report*, 2019(3), 1-20.
- Kim, Jee-Eun (2022), "Trends in Digital Trade Policies and Trade Rules in Major Overseas Countries",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37(5), 1-10.
- Kim, Min-Jung (2021), "Regulatory Development and Prospective Legal Issues for Digital Trade", *Trade Law and Policy Review*, 1, 58-79.
- Kim, Nam-Jong (2019), "Current trends and implications of discussions related to global digital trade regulations", *Weekly Financial Brief*, 28(18), 18-19.
- Kim, Yeon-Dae and Jae-Won Hong (2021), "A Study on Data Governance in Digital Trade",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22(5), 153-169.
- Kim, Yun-Keun and Bok-Jae Park (2017), "A Comparison & Analysis of Electronic Commerce of Korea's FTA",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19(2), 25-44
- Lee, Jae-Min (2018), "Digital Trade and Norms of Trade: Rapid Convergence of Goods Trade and Services Trade and Its Implication", *International Economic Law Studies*, 16(2), 93-131.
- Lee, Jae-Young (2020), "A Study on the Main Issues of Digital Trade Rules", *The e-Business Studies*, 21(3), 107-121.
- Lee, Kyu-Yub and Min-Ji Kang (2019), "Trends in International Discussion on Digital Trade Regulations: Focusing on WTO e-commerce negotiations and U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legislation", *World Economy Today*, 19(12), 4-19.
- Lee, Kyu-Yub, Won-Seok Choi, Ji-Hyun Park, Jun-Hyun Eom, Min-Ji Kang and Un-Jung Whang (2021), "Digital Trade Policy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Policy Analyses*, 21(1), 1-376.
- Lin, Xiao and Hyuk-Ku, Lee (2021), "Analysis of the Development and Influence Factors of Global Digital Trade", *Korean-Chinese Social Science Studies*, 19(4), 66-84.
- Meltzer, J. P. (2020), "Cybersecurity, Digital Trade, and Data Flows: Re-thinking a Role for International Trade Rules", *Global Economy & Development Working Paper*, 132, 1-36.
- METI (2021), *Semiconductor and Digital Industry Strategy*, Tokyo: METI.
- MOTIE (2019). *Digital trade foundation establishment plan* (Press release). Available from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93302>
- Myerson, R. (2004), "Justice, Institutions, and Multiple Equilibria",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5(1), 91-107.
- OECD (2020), *Leveraging Digital Trade to Fight the Consequences of COVID-19* (OECD Brief). Available from <https://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leveraging-digital-trade-to-fight-the-consequences-of-covid-19-f712f404/>
- OECD (2022),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Policy Trends up to 2022*. Available from <https://www.oecd.org/trade/topics/services-trade>
- Ossa, R. (2011), "A 'new trade' theory of GATT/WTO negoti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9(1),

- 122-152.
- Qian, J. (2020), “Strategic Trade Policy in the Age of Digital Trade: Implications for Asia”, in Marina Dane, *Digitalisation, trade, and geopolitics in Asia*, Konrad-Adenauer-Stiftung’s Regional Program, 1-19.
- Randall, C. (2019), *South Korea announces new EV subsidies for 2020*. Available from <https://www.electrive.com/2019/09/02/south-korea-announces-ev-subsidies>
- Skadden (2018), *Data Protection in Japan to Align With GDPR*. Available from <https://www.skadden.com/insights/publications/2018/09/quarterly-insights/data-protection-in-japan-to-align-with-gdpr>
- Son, Chang-woo and So-Young, Park (2020), “Korea-China comparison of digital trade and global issues of trade norms”, *Trade Focus*, 2020(41), 1-31.
- Token Post (2018), *South Korea to raise investment in big data, blockchain and sharing economy to over 1 trillion won in 2019*. Available from <https://tokenpost.com/South-Korea-to-invest-over-1-trillion-won-in-big-data-blockchain-and-sharing-economy-in-2019-137>
- Trachtenberg, D. M., S. I. Akhtar and M. D. Sutherland (2021), “Digital Trade and U. S. Trade policy”, CRS Report, R44565,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1-49.
- UNCTD (2019), *Digital Economy Report 2019: Value Creation and Capture :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NY: United Nations.
- Wade, R. (2004),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illemyns, I. (2021), *Digital Services in International Trade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nited Kingdom.
- World Bank (1993),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Washington, DC: World Bank.
- Wu, M. (2017), “Digital Trade-Related Provision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Existing Models and Lessons for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Overview Paper*, Geneva: 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ICTSD), 1-36.
- Yoon, Ja-Young (2018), *Korea to nurture ‘platform economy’* (The Korea Times). Available from https://www.koreatimes.co.kr/www/biz/2018/08/367_253635.html
- Yoon, Sung-Hye (2020), “China’s Digital Trade Policy Based on Cybersecurity and its Implications,” *CSF Expert Opinion*, KIEP, 1-4.